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해외연수생 도입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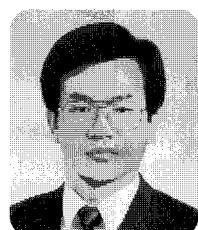
최근 5년간 농촌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농업인들이 작업인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법무부가 실시한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불법 체류자는 국내 취업중인 단순 외국 근로자 367천 명의 78.4%인 288천명이며, 이중 농업분야에도 2,500명이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해 11월 25일 총리소속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배정 대상업종에 농업을 추가함과 아울러 농업연수생 5,000명을 6개국에서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이는 중국 1,800명, 우즈베키스탄 1,800명, 카자흐스탄 800명, 몽골 200명, 우크라이나 200명, 키르기즈스탄 200명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2003년 1월 27일 「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농림부고시 제2003-4호)를 제정하고 농협중앙회를 농업연수생 모집 및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농협중앙회내에 「외국인 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하여 현재 농업연수생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연수생은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자를 모집하여 송출기관이 제출한 2배수 명단중에서 농협중앙회가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최종 인원을 선발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연수 대상은 시설 원예, 시설 베섯, 과수, 미나리, 콩나물 등 작물 재배업과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말, 사슴, 산양, 토끼, 오리, 칠면조, 메추리 등 축산업으로서 숙박시설을 갖춘 전문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과 농



허 인 구 과장
(농림부 농촌인력과)

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본 제도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도입되었고, 농협중앙회가 도입절차를 차실히 추진해온 결과 송출국가 6개국중 도입준비가 맨 먼저 갖추어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난 7월말에 242명의 인원이 입국하여 교육과 건강검진을 마치고 농가에 배정되었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금년 8월 16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1개월 이상 내국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업체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직자 명단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선택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최저임금제 적용 등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농업연수생

- 3년간 체류 가능 : 1년은 연수생 · 2년은 연수취업자 신분
- 최저임금제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

- 1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 적용, 퇴직수당,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수수당 제불 대비 이행 보증보험과

노동 3권 보장

당초에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예정이었으나 중소제조업체의 반대로 산업연수제도가 존치되었으며, 이로써 중소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및 농업분야에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되 1사업장 1제도원칙에 따라 농가는 이중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한다.

5. 200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2년간 추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후 재입국자격을 주되 출국전 체류기간을 합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보장하며,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는 2003년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이며, 2003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불법체류자와 금년 7월부터 입국하는 농업연수생 중 이탈하는 자는 합법화되지 않고 벌금 납부와 강제 출국조치를 받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농업연수제와 기본

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의 법적근거는 금년 8월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며, 농업연수제는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한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취업자는 사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제 적용, 퇴직수당,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수수당 체불대비 이행보증보험 등의 혜택과 노동3권 보장 등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농업연수생은 3년간 체류하되 1년간은 연수생의 신분으로서 최저임금제 적용,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농업연수기간 종료 이후 2년간은 연수취업자 신분으로서 노동3권을 제외한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인 취업자들이 농장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 농업인들의 영농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아니라, 고용허가에 의한 취업자의 급여가 연수생에 비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인들이 산업연수생의 고용조건이 까다롭다고 여기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는 농업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도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며, 외국인 취업자의 업종선택이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특정분야의 취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농업의 경우 고용 허가제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의 축산농가 무단 방문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농업연수생은 입국전부터 격리교육 실시 및 축산물의 휴대금지 조치, 입국 공항만에서의 방역 조치, 국내에서의 집합교육 등 철저한 방역조치 시행후 농가에 배정되는데 비해 고용허가에 의한 취업자는 스스로 입국하여 곧바로 농가에 배치되기 때문에 가축방역에 대한 조치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고용허가에 의한 외국인 취업자로 인해 가축전염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현재 농업연수생 배정신청을 한 농가는 348호에 947명이며, 이는 도입계획 5,000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 몇차례의 불법 체류자 출국시한 연장, 고용허가제 도입 등 외국 인력 제도의 변동에 따라 농업인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농업도 일정 부분 외국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제의 도입과 고용허가제의 추가 도입은 농업인들에게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 농업여건상 수당, 고용조건 등에서 농업연수제도가 고용허가제보다 농업인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되나 농업인들은 이러한 두 제도의 장단점과 자기농장 착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연수제와 앞으로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될 고용허가제 중 자기 농장경영에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양동**